

할 부 판 매 계 약 서

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구매자(이하 '갑'이라 한다.),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 (이하 '을'이라 한다.), 단말기 판매자(이하 '병'이라 한다.), 할부구매자에 대한 신용제공자(이하 '정'이라 한다.)는 PCS단말기 할부판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.

- 제1조(할부판매약정 및 할부채권양도) ① '갑'은 별지 단말기 할부계약서에 의하여 '병'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고 '병'은 단말기의 할부판매로 취득한 단말기 할부채권을 '을'에게 양도하며 '정'은 '갑'의 할부대금을 '을'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'갑'은 승낙합니다.
 - ② 본 약정은 '을'이 단말기의 할부판매, 할부금채권의 양도 등 약정사항을 직접확인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'갑'에게 할부채권의 양도를 통지하는 시점에서 성립합니다.
- 제2조(단말기 공급과 대금지급방법) '병'은 '갑'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'갑'은 소정의 선수금(계약금)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대금을 '정'에게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제3조(할부계약의 철회) ① '갑'은 할부단말기를 인도 받은 후 7일 이내에는 단말기의 할부구매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 - ② '갑'이 제①항에 의거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. 다만, '갑'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단말기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- 제4조(소유권의 제한) '갑'은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'을'의 승낙 없이 단말기를 타인에게 양도, 대여, 질권설정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.
- 제5조(구매자의 의무) ① '갑'은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주소를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'을' 및 '정'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 - ② '을' 및 '정'이 '갑'의 최후 주소에 송달한 통지 등 송부서류는 '갑'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 - ③ '갑'은 제①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'을' 및 '정'으로부터 통지 혹은 송부서류 미도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- 제6조(구매조건의 결정) 단말기할부판매는 '갑'이 '을'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으로 이루어지며 '갑'은 단말기만의 구매를 위하여 할부판매방식을 이용한 없습니다.
- **제7조(할부대금납입방법)** ① '갑'은 할부대금을 '정'이 지정한 납부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.
 - ② '갑'이 납부하여야 할 월납입금은 '을'의 서비스에 가입한 월의 익일부터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제8조(변제충당순서) '갑'이 납입한 금액이 납입일 현재 채무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, '정'은 '갑'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납기일 기준으로 먼저 도래한 채무액부터 우선 충당하기로 합니다.
- 제9조(기한의 이익상실) '갑'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'정'은 잔여 할부대금 전액에 대하여 '갑'에게 일시불 납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- 1. '갑'이 납입금의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금액이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
 - 2. '갑'이 외국으로 이민하는 경우
- 제10조(약정의 해제) '갑'이 납입금을 연체하여 '정'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하였으나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'정'은 본 약정을 해제하고 할부금액을 일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제11조(관할법원) 이 계약과 관련하여 '갑'과 '정'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발생할 때에는 제소 당시 '갑'의 주소지를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2000년 0월 0일

갑	주	소	
	성	명	인 <mark>주민등록번호 전 화 (사업자번호) - 번 호</mark>
이 교	주	소	
	성	명	인 <mark>주민등록번호 전 화 (사업자번호) - 번 호</mark>
병	주	소	
	성	명	인 <mark>주민등록번호 전 화 (사업자번호) - 번 호</mark>
정	주	소	
	성	명	인 <mark>주민등록번호 전 화 (사업자번호) - 번 호</mark>